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목 차>

- 1.자금의 차입한도 초과 차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 성 자	이름	이화영
	담당부서 (과)	지역금융지원과		직급	담당
	국장	조성환		연락처	044-205-3946
	과장	이경수		이메일	castle80@mail.g o.kr

2024. 10. 08.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금의 차입한도 초과 차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신설								
	2.규제조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7조								
	3.위임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0.18~2024.11.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7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금고에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예금인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개선 －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당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금고 총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2024.10.9. 공포/ 3개월 경과후 시행)								
	7.규제내용	○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차입당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금고 총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 차입 한도에 따른 승인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함 －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이내인 경우 : 신용공제대표이사 승인 －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1,284개 새마을금고('24년.6월 기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새마을금고</td><td>1,284</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새마을금고	1,284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새마을금고	1,284								
9.규제목표	○ 금고에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금고 회원의 재산 보호 및 신뢰 확보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금고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자금운용이 일부 제한되어 이익 감소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회원의 경우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								

		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실시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u> <u>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u> <u>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u> <u>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u> <u>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u> <u>을 받아야 한다.</u> <u>1.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u> <u>큰 금액의 5배 범위 이내인 경우</u> <u>: 신용공제대표이사</u> <u>2.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를</u> <u>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u>
<u>제7조 ~ 제13조 (생 략)</u>	<u>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u> <u>13조까지와 같음)</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7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이후, 금고에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예금인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개선할 필요
- 예금인출 등 사유 발생 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금고 총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완료('24.10.8.)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초과 차입 한도 등)'를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는 한도의 승인은 타 상호금융업권에 준하여 관리기관(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하되, 초과 차입한도는 새마을금고의 실정에 맞게 정함('23년 11월 경영혁신방안)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새마을금고	입법예고('24.10.18~11.30.)	의견수렴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입법예고('24.10.18~11.30.)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금고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금고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회원의 재산 보호와 금고의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24.10.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새마을금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시행령) 예금인출 등 사유 발생 시 행안부장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당시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금고 총자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음
 - (시행규칙)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한도 범위에 따라 승인
 -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이내인 경우 : 신용공제대표이사
 -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 상호금융업권 조합의 중앙회로부터 자금 차입한도 근거 >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 §41 ②)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6②) 조합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8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¹⁾ 및 제2항 ²⁾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신용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7배 이내	(산림조합법 시행령 §9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5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범위내대출 및 합병지원자금대출 제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8)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금인출 등 불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7)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금이 필요한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예금인출 등의 사태 발생 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동성 공급 위기를 겪는 금고의 경우 자금지원 수혜자가 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자금의 공급처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지도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유동성 위기 시 신속하게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년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 발생
- '23년 8월 새마을금고의 경영쇄신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출범,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발표
 -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 이행 점검 및 금고 지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금고경영혁신지원단 신설('23.11.29.)
-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추가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입한도를 정하도록 한 것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일환임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마련할 예정

3. 종합결론

- 금고의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여 중앙회를 통해 금고에 원활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고에 효율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고의 회원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새마을금고
활동제목	중앙회로부터 자금 차입
비용항목	건전성 유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